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569호

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7일
서울특별시

□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

연번	상 호	등록번호	등록일자	영업소 소재지
1	주식회사 이너젠컨설팅	제167호	' 20.2.19.	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, 704호(신도림동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585호

**도시관리계획[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(안),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열람공고**

1. 도시관리계획[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]의 결정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2월 27일
서울특별시

가. 구역명: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
1) 주한 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신설)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신설	주한 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	용산구 용산동1가 1-5번지 일원	-	97,259.5	97,259.5	-

다. 열람기간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라. 열람내용

-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(요약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 게재)

마. 관련도서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

바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: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

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(☎ 02-2133-8380, fax 02-2133-0738)

용산구 도시계획과 (☎ 02-2199-7393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590호

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

「하수도법」 제61조 및 「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」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개별건축물 등과 타행위에 부과·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7일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지역 : 서울특별시 전역
2.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

처리 구역	단 위	건설단가	
		2014.3.1.부터 인·허가(신고포함) 및 사업 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0.3.1~2021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	2014.2.28.까지 인·허가(신고포함) 및 사업 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0.3.1~2021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
중 랑	천원/㎡	830	633
난 지	천원/㎡	758	501
탄 천	천원/㎡	1,055	816
서 남	천원/㎡	735	494